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5. 24 선고 2021가단1198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현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24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9. 12. 27. C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원고는, 피고가 2019. 12. 27. 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C로부터 매수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, 위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C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채무자인 C가 사해행위 일자로 특정된 2019. 12. 27.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1)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2)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재필

별지

1) 이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원고는 주로 채무자(C)가 아닌 수익자(피고)의 무자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.

2) 원고는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, 위 판례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례에 적용되는 것으로,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동산 매수자금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특정하고 수익자에게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.